

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2023. 05. 02. 제정

2026. 03. 24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OCI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직무와 권한)

위원회는 제9조의 부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독립이사는 3인 이상이면서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일 전일까지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1항 11호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내부거래 중 상품·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(이사회 보고 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 4 장 기 타

#### 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지원 부서 담당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 및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#### 제14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독립이사 명칭 관련 개정규정(제4조)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